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8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04. 23.
3. 회 부 일 : 2025. 0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횡단보도나 신호기의 설치·폐지와 관하여서는 시·도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 환경, 인구 구조, 보행자·차량 통행 특성 등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설치·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시장 등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조의2(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1.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u> <u>2. 제3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관련 부담금 부과 및 환급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u> <u>3.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등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u>②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위원</u>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등이 되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
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
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에 있는 사람

2.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
술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

3.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
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

	<u>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u> 5. <u>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과장급 공무원</u> <u>④ 교통안전자문위원회의 구성</u> <u>·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권한¹⁾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시장등')에게 있으며, 이를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²⁾할

1)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³⁾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交通安全시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交通安全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에交通安全심의위원회를 두고(제16조),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도交通安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원 구성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 교통약자 관련 시민단체 구성원 등으로 하고,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 통행의 금지 및 제한, 통행 속도의 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⁴⁾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1조(交通安全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交通安全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交通安全심의위원회(이하 “交通安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交通安全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그 밖에交通安全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交通安全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6조(경찰청交通安全심의위원회) ③ 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
2.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현행 제도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지자체와 경찰 간 이견 시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시민들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 어느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설치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시행 여부에 대한 체계적 점검 부족으로 가결된 안건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위원들의 사전 안건 숙지 부족으로 실질적 심의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시장등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

3.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이창섭·육형주, "빨간불 켜진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벗어나야", 해남신문, 2017.9.25.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 구성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의 교통안전자문위원회(시장등 소속)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소속) 간의 기능 중복 및 의사결정 상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두 위원회의 결정이 상충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위원회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은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경찰 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 교통법규 집행기관인 경찰의 전문성을 배제할 경우 교통단속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현행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 통행 금지 및 제한, 통행 속도 제한 등 교통법규 집행과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경찰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통안전자문위원회에 경찰 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경찰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둘 수 있다')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설치 여부가 달라질 경우 지역 간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됨.

넷째,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한 곳이 서울시·울산시에 한정된 측면이 있는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이미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폐지 등을 심의하고 있어 교통안전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청의 지침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현행 체계가 더 적합하다는 이유로 개정안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지자체 중 서울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이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과 경찰

서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지자체장에게 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울산시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자문을 위한 행정절차 추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4